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개혁
LNU

수신자 (재)서울문화재단 귀중
(경유)
제목 시정명령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의거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청에서 2015.11.25. 귀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확인되어 행정조치(과태료)하였으니 향후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2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금액이 중과(근로자 1명당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선결	대표이사	임수경	결재	정책보좌관	
자수자	2015.12.4.	번호 호	재·공 람	본부장	전결
기과 과	서울문화재단 문화재단	담당자 화원희	팀장	감독	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과장

양승원

전결 2015. 12.

4.

오만석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지도과-10542 (2015. 12. 4.)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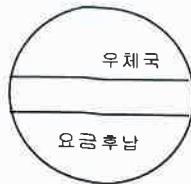
우 045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63 6층, (장교동, 장교빌딩) / seoul.moei.go.kr

전화 02-2250-5774 전송 02-2234-5986 / swanboat@korea.kr / 비공개(5,7)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이 열어갑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00-760



납 입 고 지 서 재 중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
5-67번지

0 2 5 8 9

부 과 내 역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01-19-1500-0437-5151-629

납부자	(재단법인)서울문화재단	실명 번호	110122-*****
주 소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번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허
	2015년 12월 18일		
과태료	8,000,000 원		
합 계 금 액	8,000,000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규약을 전히 수합니다

* 남기루 수남불가

447

2015년 12월 03일

서울지방고용부

۱۰

스나이

-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 납부방법 www.giro.or.kr(또는 인터넷뱅킹)→국세/법칙금(또는 공과금)→기금 및 기타국고→납부번호 입력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남부번호 01-19-1500-0437-5151-629



급여 기관	정수 관계 좌	세 익 (563)	납 기 내	납 기 후
			2015년 12월 18일	
001	000437-0	과태료	8,000,000 원	
합 계 금 액			8,000,000 원	

이크애을 스난하여 즐시키 바랍니다

* 남기루 수남불가

St. G. Tl

2015년 12월 03일

서울지방고용

스나이

〈의견진술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사실 및 의견진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은 앞쪽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란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는 앞쪽 납입 고지서 좌측 상단의 주소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또는 귀사)가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 까지 과태료를 지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쪽 고지서 “합계금액”란의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20%를 미리 감경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5.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 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기초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미성년자

6. 우리청(지청)에서 부과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앞쪽 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 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우측에 첨부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를 작성하여 우리청(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 까지 의견제출 없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경전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

※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 없음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작성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주소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2. 통지받은 위반행위(위반사실)

3.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지청)장 귀하